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2007년 개정 이후 사회의 법 문제가 복잡다기해지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법제 연구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현행법령에 따르면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회 분야의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자문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. 이에 법무자문위원회를 법률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, 위원 수를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법무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법무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‘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’에서 ‘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’으로 변경하고, 그 인원을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함(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).

나. 법무자문위원회의 간사,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의 임명권자를 법무자문위원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)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

법무자문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조제1항 단서 중 “150인”을 “155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”를 “법무 관련 전문지식이나 식견이 높은 사람”으로, “2년으로”를 “2년 이내로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”를 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30인”을 “130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”을 “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총 12명”으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위원은”을 “연구위원은”으로, “위원장”을 “법무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법무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”을 “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, 법무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·연구
2. 법무관계법령의 개선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법령의 운영을 위한 사무
3.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·연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 다만,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을 <u>150인</u> 이내로 할 수 있다.		제2조(구성) ① <u>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-----		

		----- <u>155명</u> -----		
		-----.		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위원은 <u>법률학에 조예가 깊은 자</u>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그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이내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	③ ---- <u>법무 관련 전문지식이 나 식견이 높은 사람</u> -----		
		----- <u>2년</u> 이내로 -----.		

		-----.		
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에 <u>위원 5인이내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</u> 를 두며, 위원의 분과위원회별 배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		제4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<u>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</u> -----		

		-----.		
②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·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<u>130인</u> 이내		② -----		

		----- <u>130명</u> -----		

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,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,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분과위원회(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,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④ (생략)

제7조(직원) ①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 각 5인 이내와 간사 1인을 둔다.

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조예가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·연구를 분담한다.

-----.

③-----

----- 1명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직원) ①-----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총 12명 -----
-- 1명-----.

②----- 연구위원은 -----
----- 법무부장관-----
-----.

③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·연구
2. 법무관계법령의 개선을 위한

④간사는 <u>법무부소속공무원중</u> 에서 <u>위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</u> <u>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</u> 를 담당한다. ⑤ (생 략)	<u>법적 검토 및 법령의 운영을</u> <u>위한 사무</u> 3. <u>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</u> <u>의 조사·연구</u> ④---- <u>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</u> 에서 <u>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,</u> <u>법무부장관</u>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